

지표조사의 구체적 내용 및 구성 (제15조)

작성항목	세부 포함내용 및 작성방법
1. 조사개요	<p>가. 조사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명칭을 포함하여 작성 <p>나. 조사경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목적 등을 간략하게 서술 <p>다. 조사지역 및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사면적과 지역적·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(공간적 범위는 반드시 다각형 형태로 표시. 점, 원형, 사각형 등 추상적 표현 금지) ○ 조사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, 지적도 활용하고, 사업구역도와 개별유적위치도를 반드시 첨부 ○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사업계획도를 활용하여 조사구역을 표시할 경우, 조사구역에 대한 절대좌표값(평면직각좌표)을 반드시 기재 ○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서(사업계획 평면도)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사대상 면적의 일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<p>라. 조사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사에 걸린 총 기간을 명시하되, 문헌조사 등 사전조사와 현장조사, 보고서 작성기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<p>마. 조사단 구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등급별·분야별 조사 참여자를 실명으로 명시 <p>바. 조사의뢰기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시행기관 또는 사업자를 기재하되, 계약자가 원발주처가 아닌 경우 원발주처를 병기함
2. 조사지역과 그 주변 환경	<p>가. 사업 대상지역(수역) 및 주변의 자연·지리적 환경, 고고·역사적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, 각각 구분하여 서술</p> <p>나. 지도의 활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지형도를 반드시 기본도로 활용하고, 조사보고서에 필수 수록. 정밀 토양도, 산림이용기본도, 녹지자연도, 식생도, 수치고도자료 등 기타 주제도는 조사지역의 주변환경과의 관계설명 용도로 사용 ○ 최근 대규모 현상변경이 일어난 경우가 많으므로 1950년대 이전에 제작된 지도 등을 통해 현지형과 비교 ○ 주변유적과 사업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보고서에 수록하고, 300m, 500m, 1km 반경호 표시
3. 조사내용	<p>가. 공통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헌조사 내용

- 사업구역(수역) 및 주변 국가유산 현황
 - 역사, 고고, 민속(탐문조사 포함), 자연유산, 고유지명, 고건축, 성곽 등 각 분야별 조사내용
 -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등 문화유적과 사업목적물과의 관계
 - 이격거리,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상세히 서술
 - 조사지역 현황 및 유구, 유물의 사진(칼라 3x5 크기 기준)
 - 조사범위(지역) 및 유물산포지 등이 표시된 도면
 - 지표조사 사업구역 및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국가유산 분포범위는 shape 파일과 정확한 구역을 알 수 있도록 축척 1/5,000 이상의 수치지적도 상에 작성된 도면 파일을 국가유산 GIS 통합 인터넷 시스템에 제출할 것
 - 축척 1/5,000~1/10,000 내외의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도, 해도(가능하면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평면도와 동일 축척의 지형도 또는 해도)에 조사지역을 비롯한 주변의 유물산포지 등 국가유산 분포범위와 위치를 정확히 표시. 보고서에 수록된 수치지도에는 도엽번호를 반드시 기재
 - 조사범위 내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가 이미 알려진 것일 경우, 관련문헌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, 기존 범위 및 위치 변경 필요시 그 사유와 변경사항을 정확히 표기
 - 조사지역 범위는 점, 원형, 사각형, 삼각형 등 추상적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하며, 반드시 정확한 구역범위를 표시
 - 유물산포지, 지식묘군, 고분군 등 유적의 분포범위를 면으로 표시 가능한 유적은 반드시 1:5,000 축척 수치지형도에 정확한 유적 분포범위를 곡선으로 표시
 - 지식묘, 탑, 사당 등 유적 범위를 표시하기 어려운 국가유산의 위치는 반드시 1:5,000 축척의 수치지형도에 점으로 표시. 점의 크기는 유적이 위치하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반경 5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
 - 국가기본도(수치지도, 지적도, 해도, 연안정보도)를 사용하지 않고, 자체제작한 지도를 이용하여 조사범위를 표시할 경우, DGPS 또는 RTK 등 고정밀GPS를 사용하여 조사범위 경계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GPS 좌표값 기재
 - 경주, 부여, 공주, 익산 등 고도지역에서 실시하는 조사는 GPS좌표값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, GPS 좌표값 기재시, 측지기준계, 사용타원회전체 및 투영법 등의 정보는 필수기재
 - 확인된 유구나 유적을 도면으로 표현할 경우에 대축적지도에 표현(방향과 축적을 반드시 표시)하고, 구적계로 면적을 산출하여 제시
- 나. 수중 지표조사
- 조사장비의 기종 및 제원
 - 수중저면음향영상 탐사 기록상의 이상체 영상기록
 - 지층(천부탄성파) 탐사 기록상의 이상체 기록

- 이상체 확인 칼라사진 및 종류, DGPS 위치자료
 - 조사단계별 진행과정 사진, 유구, 유물 등의 칼라사진
 - 유적과 유물의 노출상태, 규모, 인양·발굴 가능성 여부
 - 퇴적물 분석자료
 - 수중저면음향영상, 지층탐사 등 원시자료 전체
 - 조사수역의 범위와 조사항적, 이상체 분포 위치표시, 잠수조사 위치, 유물산포지 등을 도면에 표시
- 다. 기타 사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른 조사내용
- 댐 등 넓은 지역의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, 대규모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공사, 간척과 같은 연안 및 개펄지역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등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큰 변화를 수반하는 사업일 경우, 분야별 관계전문가에 의한 조사의견과 대책(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공람을 필한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)
 - 석회암층, 퇴적암층, 자연동굴, 공룡화석, 해안사구, 해안단구, 사주와 같은 지질·광물·화석, 동·식물 등의 천연기념물과 명승지가 분포하는 주변지역에서는 자연과학적 조사
 - 기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조사토록 한 사항

4.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

가. 사업대상 지역내의 유물 또는 유구의 분포여부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보존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향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·고찰하고, 조사기관 의견(원형보존, 이전복원, 발굴조사 등)을 기술하고, 아래 표로 정리

조사기관	유적번호	유적이름	행정구역 (주소)	면적(m ²)	유적성격	조사기관 의견	비고
							※이격거리

-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, 이를 계량화 또는 수치화하여 제시
 - 사업부지내 국가유산, 주변 500m이내 국가지정문화유산, 시·도지정문화유산, 문화유산자료 및 천연기념물, 명승, 시·도자연유산, 자연유산자료(이하 “지정유산”이라 한다), 기타 사업의 영향권 내 국가유산은 반드시 포함
- 나.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은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제시
- 발굴조사 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, 면적 산정
 - 특히, 사업부지내에서 유구, 유물을 미확인한 상태에서 발굴조사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지질환경, 주변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, 관련문헌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수록
- 다.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초록으로 첨부(별지 제1호서식)